



교육부

# 2020년 매치업(Match業) 사업 기본계획(안)

2020. 3.

교 육 부  
(평생미래교육국)

# 차례

I. 추진배경 및 경과 .....	1
II. 2019년 사업성과 및 개선방향 .....	2
III. 2020년 추진방향 .....	4
IV. 세부추진 계획 .....	5
① 사업개요 .....	5
② 신규 지원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 .....	6
③ 교육과정의 질 제고 .....	8
④ 학습자 및 활용기업 확대 .....	9
⑤ 매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10
V. 사업 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 .....	11
VI. 향후추진 일정 .....	14
【붙임1】 매치업 사업 계획 주요 개선사항 .....	15
【붙임2】 비목별 계상·집행 기준(안) .....	16

#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배경

- 급격한 기술변화로 고용변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며, 필요한 직무 능력을 시·공간적 제약 없이 단기간에 습득하는 교육방식이 확산\*\*
  - \* '16~'30년 취업자 변화 : 직업별로 증가하는 일자리 92만명, 감소일자리 80만명으로 총 172만명 고용변화 발생('18.3월 고용부)
  - \*\* 코세라, 유다시티, 다빈치 코더스의 마이크로디그리 등 IT기술을 활용한 교육 형태가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되고 있음
- 그러나, 미래 산업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분야 교육과정은 부족하고, 성인 대상 직무교육과정은 출석수업 중심으로 참여하기 곤란
  - ⇒ 이에 따라 '18년부터 온라인 기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분야 및 교육과정 확대 필요

## □ 주요 경과

- 국정과제로 「4차 산업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운영」 지정('17.8월)
-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기본계획 수립('17.10월) 및 명칭 공모결과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확정('18.2월)
  - ※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분야 12개 교육과정 개발('18.1월~)
- 2019년 매치업(Match業) 운영 기본계획 수립('19.2월)
  - ※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블록체인 분야 12개 교육과정 개발('19.9월~)
- 매치업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인정법 개정('19.12월)
- 매치업 이수결과 및 인증서를 인사제도에 활용하는 기업 확대('18년~현재, 50개社)
- 매치업 참여 대표기업, 교육기관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20.1~2월, 5회)

### 현장의 목소리

- ◇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만으로 빅데이터, AI 등 해당 직무능력을 습득하기에는 한계 존재, 매치업을 전담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필요
- ◇ (대표기업) 채용방식 변화(공채→상시)에 따른 매치업 활용 기대, 재직자 외 취준생 및 구직자 대상 매치업 홍보 필요

## II. 2019년 사업성과 및 개선방향

### 1 사업성과

#### □ 지원분야 확대 및 교육과정 다양화

- **(지원분야 확대)** 매치업에 참여할 대표기업 및 교육기관을 신규 선정하여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블록체인까지 지원분야 확대

< 운영분야별 대표기업 및 교육기관 현황 >

연도	2018년(3개 분야)			2019년(3개 분야 추가)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블록체인
대표기업				 LG CNS		
교육기관	전남대 등(3개)	코리아헤럴드 등(5개)	멀티캠퍼스 등(4개)	연암대	현대NGV	한양대

※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수요 전망, 상설자문단을 통해 해당분야 발굴 : ('18년)17개 → ('19년) 27개

- **(교육과정 다양화)** 대표기업,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각 분야의 교육 과정 및 직무능력인증과정 모델 개발 추진('18년 12개 → '19년 24개)

#### □ 매치업 학습자 및 활용기업 확대

- **(학습자 모집)** 강좌의 특성상 높은 난이도, 짧은 운영기간('18.10월~), 특정 전문분야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자 모집

※ 학습자 : ('18.10월) 교육과정 개발 → ('19.7월) 2.9천명 → ('19.12월) 4.8천명

- **(활용기업 확대)** 매치업 이수결과 등을 채용, 인사 및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기업 지속적으로 확대('18년 28개 기업 → '19년 50개 기업)

\* 인턴채용, 채용시험 시 가점부여, 승진 시 가점 부여 및 교육시간 인정 등

#### □ 매치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학점인정 기반 마련)** 매치업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12월)

- **(플랫폼 고도화)** 학습자 이수증, 직무능력 인증서 발급시스템 구축, 교육기관 관리자 시스템 구축

## 2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기업-교육기관 간 연계 부족 및 교육과정에 대한 환류체계 미흡

-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을 각각 선발할 경우 교육과정 개발, 직무 능력평가 모델 개발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
  - ☞ 공모방식을 대표기업-교육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 온라인 동영상 강의만으로 학습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기존 교육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체계도 미흡
  - ※ 미국 Udacity의 나노디그리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중심학습을 기반으로 강좌를 청취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나 프로젝트는 필수임
  - ☞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시범 도입하고, 교육과정별 만족도 공개 및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체계 구축

### □ 매치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

- 매치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으며\*, 매치업을 채용·교육훈련 등에 활용하는 기업은 현재 50개社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
  - \* 매치업 인지율 10.6%(’19.6월, 매치업 학습자 수요조사 결과)
  - ☞ 매치업 홍보(대학재정지원사업 설명회 등과 연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선정 시 가점부여 방안 협의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분야별 직무능력 인증평가 방식, 기준이 상이하여 인증서의 공신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평가의 경우 부정행위 발생 우려

< 현행 인증평가 시험유형 및 합격자 선정방법 >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시험유형	○ 오프라인 시험 ※ 5지 선다형(43문항+서술형(7문항)	○ 온라인 시험 ※ 4지 선다형(25문항)	○ 온라인 시험 ※ 4지 선다형(35문항+단답형5문항)
합격자 선정 등	○ 합격사정위원회 개최하여 합격점수 도출 후 합격자 발표	○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 ○ 장소 상관없이 응시 가능	○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 ○ 장소 상관없이 응시 가능

- ☞ 직무능력 인증평가 실시횟수, 부정행위 방지방안 등 최소한의 공통기준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대리시험 방지 방안 마련

### III. 2020년 추진방향

**비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인재양성**

**목표**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습자 확대**

#### 4대 분야

#### 12개 중점추진 과제

**1. 신규 지원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

- 신규 지원분야 선정
- 신규분야 교육과정 개발
- 직무능력인증평가 모델 개발

**2. 교육과정의 질 제고**

- 교육과정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 교육과정 개편 및 인증평가 개선·부대비용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학습자 및 활용기업  
확대**

- 학습자 확대
- 매치업 활용기업 확대
- 직무능력 인증서 공신력 확보

**4. 매치업 활성화  
위한 지원체계 확립**

- 지속가능한 매치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매치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 상시협의체 활성화

## IV. 세부추진 계획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18년 ~
- (예산) '20년 1,587백만원

구분	지 원 방 향
신규 선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산) 640백만원</li> <li>▪ (선정규모) 2개 분야 각 4개 교육과정(직무) 이상</li> <li>▪ (지원내용)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및 직무능력 인증평가 기반 구축</li> </ul>
기존 운영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산) 418백만원</li> <li>▪ (운영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블록체인</li> <li>▪ (지원내용)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238백만원), 인증평가 운영(180백만원) ※ 지원내용별 부족(또는 불용)액 발생 시 상호 활용 가능</li> </ul>
사업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산) 529백만원</li> <li>▪ (지원내용) 매치업 운영관리시스템 개선·유지비, 상시협의체 운영 등</li> </ul>

- (주요내용) 산업분야 대표기업이 핵심직무 제시,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하고, 교육기관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설·운영



- (신규 지원분야 선정)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매치업 사업에 참여할 대표기업 및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및 인증평가 모델 개발  
※ 2개 분야의 대표기업 및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과정(8개 이상) 개발 예정
- (교육과정의 질 제고) 품질관리위원회 구성, 만족도 공개, 오프라인 학습활동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 (학습자 및 활용기업 확대) 학습자 대상 인센티브 마련하고, BEST HRD 선정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2

## 신규 지원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

### □ 신규 지원분야 선정

- **(선정규모)**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매치업 사업에 신청한 컨소시엄을 평가하여 **2개 분야 선정**

※ '19년 선정분야는 제외(단, '18년 선정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분야 교육과정을 신규 개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4차 산업혁명 분야)** 가상현실/증강현실, 대체에너지, 드론, 로봇틱스,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헬스, 사물인터넷, 산업별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엣지 컴퓨팅, 웨어러블 기기, 정보보안, 지능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 선박, 클라우드, 하이테크 섬유, 3D 프린팅,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등

- **(참여방법)** 참여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

\* 해당분야 여러 대표기업이 함께 참여 가능하며, 기 참여기관도 가능(단, 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진단제외 대학은 참여 불가)

- **(평가방법)**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100% 정성평가하되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후 선정

\*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발표평가로 진행

- **(평가위원)**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상피제 적용으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 **(협약체결)** 교육부와 대표기업 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직무능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 체결

- **(컨설팅)** 제출한 사업계획과 관련 효율적인 사업관리·운영 및 성과도출을 위해 평가위원이 컨설팅 실시

#### < 매치업 운영기관 공모선정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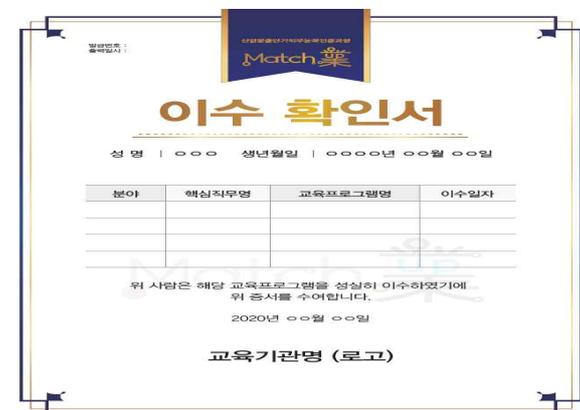
※ 단, 공모결과 선정기관이 없을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대표기업 및 교육기관 지정 가능

## □ 신규분야 교육과정 개발

- **(핵심직무 개발)** 대표기업이 기업 자체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산업분야에 필요한 핵심직무 및 세부직무능력 제시
  - 선정분야별 4개 이상의 핵심직무를 제시하여야 하며, 핵심직무 및 세부직무능력은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
  - \* (예시) 머신러닝/통계방법론 핵심 이론을 이해한 후 대규모 자료의 통계를 처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과정 개발)** 교육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표기업에서 제시한 직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분야별 4개 이상 교육과정)
  -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부터 대표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분야 직무경험자가 교수자로 참여 및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과정\* 시범 도입
  - \* (예시) 파이썬에서 2차원 히스토그램 필터에 대한 센스 및 이동 함수를 구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별(핵심직무 별) **13주차 강좌**(2개 이상의 강좌 주차 합산 가능) **무료 운영**

## □ 직무능력인증평가 모델 개발

- **(인증평가 모델 개발)** 대표기업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분야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문항 등 개발
  -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온라인 평가(CBT, IBT 기반 평가)도 집합시험 형태로 진행
- **(인증서 발급)**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교육기관장 명의), 인증평가 합격자 대상 **직무능력 인증서 발급**(대표기업, 국평원장 공동 명의)



< 매치업 이수 확인서 >



< 매치업 직무능력 인증서 >

### 3

## 교육과정의 질 제고

### □ 교육과정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 **(품질관리위원회)** 교육과정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기관(국평원) 내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 ※ 기존 상설자문단을 확대하여 구성하고, 운영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체 담당 위원 보강(성과평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등 자문활동 수행)
- **(만족도 공개)**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예비 학습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만족도 공개**
  - ※ 교육과정별 만족도 평가 참여인원, 평균만족도를 표시하고 후기작성 게시판 추가

### □ 교육과정 개편 및 인증평가 개선·부대비용 지원

- **(교육과정 개편)** 품질관리위원회의 평가결과, 만족도 조사결과를 해당기관에 제공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 ※ 운영성과 및 운영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인증평가)** 인증평가에 필요한 문항 추가개발 및 문제풀 구축, 시험 장소 임차, 감독관 수당 등 **부대비용 지원**(인증평가 당 5백만원 내외)
  - ※ '18년 선정분야 인증평가(연 2회), '19년 선정분야 인증평가(하반기 1회)

###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습활동 지원)** 교육기관은 조교(TA)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학습자간 질의응답, 토론 등 상호작용 지원**(단, 협약기간 내)
  - 강좌별 온-오프라인 학습자 커뮤니티 구성·운영, 오프라인 특강 및 현장견학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로 **온라인 교육의 한계 보완**
  - ※ 운영성과 및 운영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교육과정 연계)**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는 대학은 **매치업을 활용한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등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에 **활용 권장**
  - ※ 학점인정법령 개정에 따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준 충족하는 교육과정 개발 유도

## 4

## 학습자 및 활용기업 확대

### □ 학습자 확대

- **(학습비 부담 완화)** 교육과정 별(핵심직무 별) 13주차(2개 이상의 강좌 주차 합산 가능)이상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
  -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학습비를 책정하되 참고할 수 있는 적정 기준 마련·제공(현재, 무료~272천원으로 다양)
- **(구직정보 제공)** 매치업 활용기업의 채용정보 홈페이지와 매치업 홈페이지 연계로 기업의 구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인센티브)**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는 대학은 매치업 이수학생, 인증서 취득학생 대상 인턴십 기회 우선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 선정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서 컨설팅 시 관련내용 안내

### □ 매치업 활용기업 확대

- **(상시발굴)** 유관단체 등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매치업 활용기업 신청 접수창구'를 상시운영 하되, 적정규모의 활용기업 유치
  - ※ 중견기업 이상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까지 확대
- **(기업지원)** 직무능력 인증서 취득자(개인이 동의한 경우) 인력풀 작성 및 활용기업에 제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선정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산업부, 고용부와 협업 추진)
  - ※ BEST HRD 인증혜택 :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고용부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 시 가점부여 등

### □ 직무능력 인증서 공신력 확보

- **(기준마련)** 매치업 인증평가 실시횟수(연간 1~2회), 일정 및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부정행위 방지 방안 마련
  - ※ 상시협의체 논의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시험유형, 방식 등 적정기준 마련
- **(문제해결형 과제 도입)** 신규 교육과정은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과제를 시범 도입하고 직무능력인증평가를 위한 필수과정으로 도입

## 5

# 매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 지속가능한 매치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발전방안 마련)** 매치업 운영의 개선 필요사항\*, 플랫폼 고도화 및 관리 등 정책연구를 통해 매치업 발전방안 마련

\* '18년 매치업 개발·강좌 협약기간 이후 소유권 귀속 주체,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

- **(학습환경 개선)** 매치업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학습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통합 아이디\*** 도입 검토

\* 아이디 연계 가능여부 기술적 검토 추진 및 가능 시 시스템 개선비 지원

※ 매치업 활용기업 구직정보 실시간 연계 및 교육과정 만족도 실시간 제공 등 동시 추진

### □ 매치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 **(발굴)** 매치업을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하거나, 직무능력 인증서 취득자 대상 인턴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용사례 발굴

구분	발굴분야
학습자	매치업 교육과정 이수 후 전직 및 취업에 성공하거나, 관련 직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은 사례 발굴
교육기관	콘텐츠 질 관리 노력, 대학 내 교육과정과 연계, 학습자 소통 및 지원, 홍보 등 모범적 운영사례 발굴
기업체	매치업 이수결과 및 인증서 취득자 대상 승진, 교육시간 인정, 인턴채용에 반영하는 등 우수 활용 기업체 선정

- **(확산)** 매치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상 및 우수사례 홍보 추진

### □ 상시협의체 활성화

- **(구성·운영)**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분야별 대표기업과 교육기관 담당자 주축으로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운영

※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계 관계자, 산학협력 전문가 등 추가 참여

※ 교육과정 개발 단계인 1차년도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운영단계에서는 탄력적 운영

## V.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

### 1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 □ 사업추진 체계도



#### □ 사업 주체별 역할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대표기업 MOU 체결 등 사업 총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위탁기관으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품질관리위원회 및 상시협의체 구성·지원, 사업비 집행·관리, 성과 관리, 교육기관과 MOU체결 등
- **(대표기업)** 핵심직무 발굴·제시, 직무능력 인증평가 실시 및 인증서 발급
- **(교육기관)** 강좌 개발·운영, 학습자 권익보호 준수 등 자체 질 관리
- **(품질관리위원회)** 교육과정 운영성과 및 계획 평가 등 매치업 운영에 대한 자문
- **(상시협의체)**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습자 모집, 직무능력 인증평가, 활용기업 연계 등 운영분야 전반적인 사항 협의

## 2 성과평가

### □ 평가 방향

- 매치업 사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선정기관 간의 경쟁유도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객관적인 평가 체계 마련·추진
- 평가방식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되, 정량평가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허위 자료 제출 확인 시 예산삭감 등 제재조치
- '18년 선정기관은 교육기관 단위로 평가('19년 이후는 컨소시엄 단위)

### □ 주요내용

#### ○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

구분	평가대상	평가내용
'18년 선정기관	9개 교육기관	'18~'19년 운영성과+'20년 운영계획
'19년 선정기관	3개 컨소시엄	'20년 운영계획

※ '20년 선정기관 운영비는 교육과정 개발 후 운영계획 평가 등을 통해 '21년 예산으로 교부 예정

- (평가기간) '18년 선정기관('20.4월), '19년 선정기관('20.8월)
- (평가자료)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운영성과 보고서 및 계획 보고서
- (성과지표) 성과 지표는 사업 운영의 성과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 성과 지표(안) 】

구분	평가구성	평가내용	점수
'18년 선정기관	운영성과	정량 · 교육과정별 학습자 수, 이수율 및 만족도	20점
	정성	· 교육기관의 매치업 전담조직 전문성 · 교수학습전략(평가방법, 상호작용전략 등)의 적절성 및 효과성 · 교육과정 질 관리 및 학습자 모집 홍보 등의 우수성 · 교육과정의 대·내외 활용 실적의 우수성	50점
'19년 선정기관	운영계획	정성 · 교육기관의 매치업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선 계획 및 학습활동 지원계획의 우수성 · 교육과정 품질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학습자 모집 홍보 및 교육과정 활용 계획의 다양성 및 실효성	30점
	운영계획	정성 · 컨소시엄의 역할분담 및 협업계획의 적절성 · 교육기관의 매치업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의 적절성 · 교수학습전략(평가방법, 상호작용전략 등)의 다양성 및 적절성 · 교육과정 품질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학습자 모집 홍보 및 교육과정 활용 계획의 다양성 및 실효성	100점

※ 세부내용은 매치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확정

- (평가결과 등급 결정)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선정연도별 평가대상 기관 등급 부여(평가대상 기관 수를 고려하여 적정 배분)
- (결과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20년 운영비 차등지원(단, 선정연도별 교육 과정 운영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원)
  - 차등지원(안) : S등급(40%내외), A등급(50% 내외), B등급(10% 내외)

### 3 예산편성 및 집행

- 사업비는 교육기관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되, 교육기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 관리
- 위탁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 교육기관은 컨소시엄 별 사업비 최종 확정 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교육기관은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는 것이 원칙
  - 건물 신축 및 증개축 투자 불가, 기존 직원 급여 및 정기적 수당 지급 불가
-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투자 불가

### 4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비는 '21년 2월말까지 집행 완료
  - ※ 대표기업 및 교육기관 지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집행완료 기간 변경가능,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사업 종료시 반납
- 연차별 사업 종료 후 운영성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국고 집행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사업위탁기관은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 실시

## VI. 향후추진 일정

- '20년 매치업 운영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 ~ '20.3월
- '20년 매치업 운영 세부시행 계획 수립 : ~ '20.3월중
- 매치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 '20.3월~
- '18년 선정기관 성과 및 운영계획 평가 : '20.4월
- '20년 매치업 사업계획서 접수 : ~ '20.5월
- '20년 매치업 대표기업 등 선정평가 : ~ '20.5월
- '20년 매치업 대표기업 등 선정 및 협약체결 : '20.6월
- '20년 사업계획서 컨설팅 : '20.6월
  - ※ 선정된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방향,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 자문
- '20년 운영분야 교육과정 개발 : '20.6월 ~
- 매치업 플랫폼 기능개선 : '20.6월~
- '19년 선정기관 운영계획 평가 : '20.8월
- '19년 운영분야 교육과정 개발 완료 : ~ '20.7월
- '19년 운영분야 교육과정 학습자 모집 및 운영 : '20.8월~
- '20년 매치업 운영분야 교육과정 운영 : '21.3월~
- '20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21.3월
- 매치업 활용기업 발굴 : 상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1

## 매치업 사업 계획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b>□ 신규 지원분야 선정</b>		
선발규모	○ 3개 분야	○ 2개 분야 ※ '18년 선정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교육과정 신규 개발하는 경우 선정가능
신청대상	○ (기업) 해당분야 대표기업 ○ (교육기관) 대학·기능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시설, 기업 내 인력개발 관련 기관, K-MOOC 운영 기관	○ 좌동
참여방법	○ (공모) ①기업 단독, ②기업 간 컨소시엄, ③기업-교육기관 컨소시엄, ④교육기관 단독 신청 중 선택 가능 ○ (지정) 상설자문단에서 추천한 운영 분야별 선도 기업, 기존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가능	○ (공모) 기업-교육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해당분야의 여러 대표기업이 함께 참여가능하며, 기 참여기관도 신청 가능 ○ (지정) 평가결과 모두 탈락할 경우 별도절차를 통해 지정 가능
평가방법	○ 서면 및 대면평가	○ 서면 및 대면평가 ※ 대면평가 필수
교육과정개발	○ 교육과정별 퀴즈, 시험 구성 등 교육기관 자율에 맡김	○ 해당 분야 직무경험자가 교수자로 일부과정에 참여,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과제 시범 도입
지원예산 및 교부방법	○ (대표기업) 핵심직무 및 인증평가 모델 개발비(최대 100백만원) ※ 과정당 25백만원 ○ (교육기관) 강좌개발비 과정당 50백만원	○ (컨소시엄) 분야별 4개 이상 교육과정 및 인증평가 모델 개발(최대 320백만원) ※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교육기관에 예산 전체교부(과정당 80백만원)
<b>□ 기존 운영분야</b>		
인증평가비 지원	○ 인증평가 실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필요 경비 지원	○ 인증평가 실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필요 경비 지원(평가 당 500만원 내외)
교육과정개편 및 학습활동비 지원	-	○ 품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공개 ○ 운영성과 및 운영계획을 평가하여 교육과정 개편 및 학습활동 지원비 차등 지원 (총 238백만원)
<b>□ 학습자 및 활용기업 확대</b>		
학습자 확대	○ 일부 교육과정 무료 운영	○ 일부 교육과정 무료 운영, 매치업 활용기업 구직정보와 연계
활용기업 확대	○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활용기업 발굴	○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활용기업 발굴 (적정규모 우선 발굴)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시 가점 부여 검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인증서 공신력 확보	○ 평가방식 등을 대표기업 자율에 맡김	○ 직무능력 인증평가 실시횟수, 부정행위 방지 방안 등 최소한의 공통기준(안) 마련

□ **신규 선정분야**

구 분	집행기준	비 고
1. 교육과정 및 인증평가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직무, 세부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가 수당</li> <li>- 직무능력 인증평가방식 개발을 위한 전문가 수당</li> <li>- 동영상 개발을 위한 편집비, CG, 스크립트 개발비(번역비), 교안제작비, 검수비 등</li> <li>- 저작권 사용료, 영상 디자인 비용 등</li> <li>-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장비, 장소 등 리스. 임차비</li> <li>- 기존 소속 직원인 경우 별도의 교안제작, 번역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경비</li> <li>-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위한 문항 출제비용</li> <li>- 평가시스템 구축 등(단, 설비 및 장비 구입비 제외)</li> <li>- 인증평가와 관련있는 기기, 장비의 임차 및 사용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제작 관련 시설비, 설비 및 장비 구입비 집행불가</li> <li>- 교강사, 직원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 수당성 경비 지급불가</li> <li>- 사업 수행 기간 종료 2개월 이내에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기기·장비의 임차(리스) 및 사용 경비 집행불가</li> </ul>
2.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치업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 급여(4대보험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시행 관련 인력이 아닌자에게 대한 인건비·수당 지급불가</li> <li>- 기업 소속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인센티브 등 수당성 경비 지급 불가</li> </ul>
3. 기타 사업운영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li> <li>※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인력이 아닌자에 대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불가</li> <li>-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등 집행불가</li> <li>- 토지매입, 건물 및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경비 집행 불가</li> <li>- 기업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집행불가</li> <li>※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사업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 집행 불가</li> </ul>

## □ 기존 운영분야

구 분	집행기준	비 고
1. 교육과정 운영 및 인증평가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개선비</li> <li>- 직무능력 인증평가 문제항목 개발 등 비용</li> <li>- 과정별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 오프라인 특강 등 다양한 학습활동비</li> <li>- 인증평가에 필요한 경비 고사실 임차비, 감독비, 답안채점비, 합격사정위원회 개최 경비 등</li> </ul>	
2.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19년 매치업 교육과정, 직무능력 인증평가 개발·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된 직원 급여(4대보험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시행 관련 인력이 아닌자에게 대한 인건비·수당 지급 불가</li> </ul>
3. 기타 사업운영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관 매치업 홈페이지 개선비용</li> <li>- 기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li> <li>※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 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인력이 아닌자에 대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불가</li> <li>-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등 집행 불가</li> <li>- 토지매입, 건물 및 시설의 신축증축, 개축 경비 집행 불가</li> <li>- 기업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집행 불가</li> <li>※사업효과가 미미한 행사, 교육 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 집행 불가</li> </ul>